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송기춘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560-82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38(서신동) 4층 / E-mail:onespark@chol.com / 누리집 <http://www.onespark.or.kr>

수신처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언론사
참고	언론사 사회부
내용	전북장학숙 및 풍남학사 관련 조례 등에 대한 인권위 차별진정
담당자	채민 (010-8639-0214, 063-278-9331)

[보도자료]

전북장학숙 및 풍남학사 관련 조례 등의 차별적 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현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장학숙조례) 등에 따라 서울과 전주 각각 1곳에 전북장학숙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고, 전주시 역시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풍남학사조례) 등에 의해 서울에 풍남학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전북장학숙조례 및 풍남학사조례와 관련 규칙이 1) 2년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에 입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점, 2) 입사선발기준이 과도하게 학업성적 중심인 점, 3) 학생의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점, 4) 지자체 관내 지역 출신 도민에 지원이 한정된 점, 5) 보다 근본적으로 향토인재라는 정의를 대학 진학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북장학숙조례 및 풍남학사조례와 관련 규칙에 대해 차별 진정을했습니다.
4. 지역 사회단체들과 언론사의 많은 관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전북장학숙 및 풍남학사 관련 조례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사유

2013. 1. 29. 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송기춘)

전북장학숙 및 풍남학사 관련 조례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사유

1) 2년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에 입사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 풍남학사조례 제5조(입사대상자 및 자격)에서 ‘입사대상자는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소재 4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또는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장학숙조례 제5조(입사생의 자격)의 제1호에서 ‘서울장학숙 일반 입사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이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고, 선발요강에서도 2년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에 입사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북장학숙조례 조례 제5조의 제2호에서 ‘전주장학숙 입사대상자는 전라북도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이어야 한다.’에서 2년제 대학교의 학생의 입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전북장학숙조례 제5조 제1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2년제 이상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서 입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하여보면 전주시 풍남학사조례나 전북장학숙조례중 서울장학숙 입사대상자는 모두 4년제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년제 이상의 대학(교)의 신입생과 재학생은 입사조건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입사선발기준이 과도하게 학업성적 중심적이다.

전주시 풍남학사 선발요강 3항(지원자격)과 전북장학숙의 선발규칙 제4조(입사자격)이 공통적으로 일반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80점 이상’으로 설정하여 높은 학력(學力) 위주로 선발하고 있고 심사평점기준 또한 성적50점, 가정형편정도 50점으로 하여 합계 100점으로 하여 규정하여 지나치게 고학력 위주의 선발 자격과 선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입사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나.호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3) 학생의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

전주시 풍남학사 선발규칙 제6조(입사자격 제한)와 12조에서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자’의 경우 입사자격을 제한 및 퇴사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전북장학숙 선발규칙 제5조(입사자격 제한)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입사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병력(病歴)에 의한 차별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정전염병 B형 간염자라도 기숙사 입사를 제한하는 사건(사건번호 : 10진정 076860)에 대해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병력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숙사 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데 시행규칙이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라는 모호하고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전염병 병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의한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자체 관내 지역 출신 도민에 지원이 한정되어 있다.

전주시 풍남학사조례 제5조(입사대상자 및 자격) 경우 ‘보호자가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또는 기졸업자)’라면 누구에게나 입사자격이 부여하는 규정에서 보호자의 출신지역을 장학숙 입사의 필수기준으로 넣었다. 하지만 타지역 학생들 중 보호자주소와 상관없이 그들만 도내에 거주 했거나 거주 하고 있고 또 도내 학교출신의 학생들도 입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북장학숙조례 제5조(입사생의 자격)는 ‘서울·전주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북도에 되어 있거나 보호자의 본적이 전라북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로...’라는 규정과 전주장학숙 선발요강에서 ‘1.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자 2.타도 거주자중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 (단,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주시인 경우 제외)’로 주소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 출신이라 할지라도 전북 소재의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는 학생들 중 향후 전북에 거주할 수 있고 그들이 인재로서 역량이 있는 학생들에게 전주장학숙의 입사를 배제하는 것도 국가위원회법 2조 3항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중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의한 차별에 해당에 해당한다.

5) 보다 근본적으로 향토인재라는 정의를 대학 진학자에만 국한되어 있다.

전주시 풍남학사조례 및 선발규칙과 전북장학숙 조례 및 선발규칙 모두에서 향토인재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으로 전제하고 있다. 향토인재에 대한 규정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역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여겨진다. 반드시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만을 향토인재로 볼 수 없으며, 기술학교나 취업 등 기타 여러 방면에서 사회진출을 한 도민 역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인재를 대학 진학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의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學歴)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여겨지며 대학 진학자가 아닌 학생 및 시민들에게 역시 전북장학숙과 풍남학사의 입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